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1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남인순 · 송옥주
서미화 · 백혜련 · 전종덕
김문수 · 이원택 · 이진태
전진숙 · 복기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, 결산서,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,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.7%, 2021년 64.6%, 2022년 65%, 2023년 65.3%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.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.

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 · 직급 · 직무 · 근속연수 ·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,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

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 1항제3호의2 신설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임원의 성별,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, 근로자”
를 “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 현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

나.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별 임금
현황

다. 성별 승진 관련 현황(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)

라.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 현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
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공시하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경영공시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 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11조(경영공시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(<u>임원</u> <u>의 성별, 임직원의 성별 임금</u> <u>현황,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</u> <u>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</u> <u>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</u>)	3. ----- <u>근로</u> <u>자</u>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<u>3의2. 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</u> <u>현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</u> <u>항</u> <u>가. 직종 · 직급 · 직무 · 근속</u> <u>연수 · 고용형태별 근로자</u> <u>의 성비</u> <u>나. 직종 · 직급 · 직무 · 근속</u>

4. ~ 16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</u> <u>의 성별 임금 현황</u> <u>다. 성별 승진 관련 현황(성</u> <u>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</u> <u>포함한다)</u> <u>라.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</u> <u>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</u> 4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